

PC통신과 명예 ·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신 각 철(법제처 법제연구관)

최근 PC통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역기능으로 명예·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현행의 법률체제내에서 살펴본다.
(이 글은 필자소속기관과 무관한 개인의견임을 밝힌다)
- 편집자주 -

문제제기

최근 PC통신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여 토론문화의 향상과 여론형성에 도움을 주고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특정인을 상대로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음란·폭언 또는 이적성 표현물 등 불건전한 내용들이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PC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박갑동(가명) 사장은 요즈음 가입회원간의 분쟁으로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가상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박사장의 PC통신 네트워크 ‘백두산 서브’에는 가입자가 약 50만명으로 성업중이며, ‘전자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 또는 수백건씩 회원들의

의견이 수록되고 있다. 의견의 내용을 보면 건설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이적성 표현물도 있고, 특정인을 심하게 중상·모략하는 내용이 익명으로 게시판에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의 문제의 발단은 연예계에 있는 인기작가 춘희(가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익명으로 중상하는 내용(예컨대, 남녀불륜관계·친족관계·기타 프라이버시 침해내용)이 수록되고 있다. 이에 격분한 춘희양(원고)이 PC통신 ‘백두산 서브’ 사장 박갑동(피고)씨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자.

- 피해자 원고(춘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박갑동)는 「백두산 서브」 PC통신 네트워크의 전자게시판에 수록된 원고중 중상하는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앞으로는 전송을 일체 중단할 것.

② 익명으로 원고에게 중상모략을 계속하고 있는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

③ 익명의 정보제공자를 상대로 명예·프라이버시 침해로 형사고소할 계획임.

- 이에 대하여 PC통신사업자인 피고(박갑동)는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즉 원고의 주장에 관한 답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① PC통신에 게재된 회원의 정보(메시지)를 설사 타인을 중상하는 내용이라 하여도 통신사업자(本人)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경우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차칫 잘못 처리하면 박갑동씨도 처벌대상이 된다).

② 익명으로 메시지로 원고(춘희)를 중상하는 자에 대하여 즉 회원의 주소·성명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헌법과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 준수 의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③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최근에 크게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무」(개인정보보호법)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준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규정이다.

이에 따라 PC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박갑동씨는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 어느쪽을 편들어줄 수 없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원고(명예훼손 피해자)의 주장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피고(익명의 메시지제공자)에 대해서도 회원으로서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최근에 일본의 PC통신업계에서 발생하였다.

약 20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형 PC통신 네트워크 「니프티서브」에서 가입회원인

하나꼬양(가명)에 대하여 심하게 중상하는 메시지가 익명의 회원으로 부터 전송되고 있어 하나꼬양은 동경지방법원에 메시지삭제 및 익명회원의 신상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중상·모략의 메시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지난번 국회의원선거에 특정후보를 중상하는 내용이 수록되었고, 최근에는 정부 모부처장관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방하는 내용도 수록된 바 있다. PC통신과 명예·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PC통신의 법적성격

위의 사건과 같이 특히 최근 크게 확장되고 있는 PC통신과 관련된 법원의 해석(판례)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미국 등에서도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에 현행의 법률체제내에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PC통신의 공공성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PC통신」에 대한 공공성 등 성격부여에 있다. 즉 PC통신의 성격이 종래의 '통신의 비밀보호'에서 요구하는 전화·전보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과 같이 1:1로 특정인끼리만 주고받는 좁은 의미의 통신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PC통신 전자게시판에 수록된 메시지는 이 사건에서 '백두산' PC통신과 같이 다수의 회원(약 50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즉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정보화사회」(94.8월호)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 있거니와 오늘날 고도정보사회에서 PC통신은 단순한 좁은의미의 통신(전자우편)의 개념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신문·TV·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같이 공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정보화사회」 94.8. 참고).

한편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근거로, PC통신은 이용자가 계약을 통하여 참가하는 「회원제 네트워크」이므로 특정인에게만 이용되는 정보매체이고 신문·TV 등의 매체와 같이 일반이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PC통신의 ‘회원제’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 부여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회원만 이용하든 아니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기통신」 자체에 현행법에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전과관리법 등 전기통신관계법률의 목적규정에서 전기통신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등 공공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가(체신부장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전기통신기본법 제4조).

PC통신은 부가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28조)으로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체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법령 위반시에는 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이는 PC통신이 전기통신사업으로 공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고 지도·감독 및 법령위반시에 시정조치 또는 사업을 제한, 정지할 수 있고 등록도 취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PC통신에 대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면 이와같이 국가기관에서 관장하고 감독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헌법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듯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헌법상 중요한 국가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업무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도 재직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93.12.27)에서는 통신의 비밀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규정 및 전기통신관계법상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의 사례에서 박갑동씨는 설사 피해자(원고)의 요구가 있다하여도 마음대로 메시지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없다. 피해자의 요구대로 익명의 메시지 제공자의 성명·주소 등 신상자료를 공개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보장

통신의 비밀과 자유보장은 헌법(18조)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헌법(제1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의 두가지 기본권은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모두가 중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것과 자신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권익을 존중한다면 상대방의 권익도 존중해야 하는 자연법 원리의 근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위의 사건에서 상대방(원고측)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서, 통신의 자유라는 이유로 익명정보자가 개인정보공개를 기피한다면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에 위반된다.

이미 밝힌 바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무제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PC통신 사업자가 취해야 할 태도

통신역무제공의 의무

PC통신사업자 즉 정보통신 역무제공자의 의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PC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제공의 거부 즉 삭제하거나 중단을 할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명백히 음란·외설 등의 정보, 또는 이적성 표현물의 게재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 또한 이에 대한 판단도 사회통념상 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특정인을 중상하는 내용은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명예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건이 해석상 복잡하기 때문에 PC통신사업자로서 결정할 성질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측의 요구대로 PC통신사업자가 마음대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중단하기는 곤란하다.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문제

이 사건에서 원고측이 명예·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PC통신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할 수 있다’라고 신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PC통신사업자가 회원가입과 관련한 서류 요청 즉 일명의 메시지 제시자 확인 등을 위한 관계서류의 요청에 응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판단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법원의 영장 등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회원의 성명·주소 등 신상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PC통신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위의 사건에서 원고측(피해자)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PC통신에 허무맹랑한 중상성 메시지를 익명으로 게재하여 특정인을 계속적으로 괴롭힌다면 개인의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PC통신사업의 경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앞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원고측 주장대로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도 없

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도 없다. 물론 통신의 비밀보호, 개인정보의 보호 등 법적규제로 공개할 수도 없지만 사업자로서 회원보호를 위하여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PC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PC통신 등 정보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다. 정보통신서비스가 공공성·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이고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판단된

다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통신은 거부해야 마땅하다.

또한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자(PC통신사업자)의 위치에서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PC통신에 대하여 공공성이 부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

신규필자모집

1. 원고내용 : 정보통신 관련 제언, 정책동향, 기술동향, 법령해설 등 정보사회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글
2. 분 량 : 30매 내외(200자 원고지)
3. 마 감 : 매달 25일
4.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28
데이콤빌딩 1401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진흥부
TEL : (02)796-6443 FAX : (02)796-6510
5. 기 타 :
 - 도착된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원고 제출시 증명사진 1매, 약력,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온라인통장번호 등을 작성해 주십시오.